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23. 3. 2.>

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인적사항</td><td rowspan="2">성명/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성명(한글)</td><td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성명[외국명(여권 이름)]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국외여행
허가기간</td><td></td><td>여행목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확인사항</td><td colspan="4">◎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,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 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예 [ ])
◎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. (예 [ ])
◎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(또는 허가취소 후) 미귀국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. (확인 [ ])
1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(기피목적 있을 시)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
2.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
3. 취업 및 관허업의 인·허가 등 제한
4. 여권 무효화* 및 발급 제한 조치
* 유효 여권이 있을 경우 반납명령이 내려지며, 미 반납 시 무효화 조치됨
◎ 「병역법」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시 귀국명령을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「병역법」 제94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 (확인 [ ])</td></tr>
</table>

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,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등 허가의무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 (예 [ ])

※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위 확인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(예 [ ])

년 월 일

확인자 (서명 또는 인)

병역의무자와의 관계 :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